

태풍, 홍수피해 조기 복구에 총력...



▲홍수로 계사내 케이지가 엇가락처럼 쓰러져 있다.(강원도 인제)

1. 안타까운 피해현장

지난달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폭우(7.14~7.17)로 인해 전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다.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전남, 충북, 울산, 경북, 경남, 부산지역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지역으로 전국이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이번 피해로 지난 21일 현재(소방방재청 집계) 사망 28명, 실종 21명으로 총 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으로 614동의 주택이 전파·반파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침수 2,180동으로 집계되었고, 농경지 패해도 2,239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는가 하면 축사 및 양계장도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닭은 50만수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인제, 평창, 양구, 양양, 홍천, 횡성, 정선), 경남(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경북(경주, 울산(울주), 전남(완

도) 등 총 18곳이다.

피해가 심한 강원도 인제지역의 피해현장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었다. 모든 도로들이 끊겨 사료를 공급할 수 없어 그대로 닭을 굶겨야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계사가 주저앉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그대로 바라만 봐야하는 농장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주었다. 통신두절로 피해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양계장의 피해도 더 늘 것으로 보이며, 인명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축사 피해를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타까움을 더해주었다.

2. 복구비 지원

농림부는 피해조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 자금(500억원) 용자 및 경영회생자금 1,000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하였으며, 가축방역 기술지원단(검역원)을 운영하는 등 조기복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은 금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는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한 후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파견,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와 농림부·해수부·건교부·산림청 등 소관시설별로 분산 지원함에 따라 통상 재해발생 후 2~3개월이

지난 뒤에 지급되었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표2의 서식에 피해규모 등을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보고하면, 시군구에서 확인 즉시 시군구 자체 예비비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토록 함으로써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금액은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개인별 피해상황을 통합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며, 표3의 재난등급은 1부터 350까지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기준지수 및 지원금은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계에 의해 산정된다.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 지방비 30%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고추가지원율에 따라 산정하여 복구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조속히 신고해야 한다. 양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이더라도 무허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설해와 마찬가지로

표1.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구분	종류	규격	단위	단가
축사	계사	산란계사	m ²	200,500
		육계사	"	168,500
	간이축사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축사 부대시설	분뇨 처리시설	닭(평사) 닭(케이지)	m ² "	78,500
	가축입식	산란계	병아리	마리
중추			"	1,877
육계		병아리	"	427
		중추	"	740

(농림부)

로 피해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는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에서 산정한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는 표1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재난등급이 책정된다.

3. 태풍·호우피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절차

1) 관련규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

표2.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 중 피해내역 작성란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허가번호

5)가축·생물				
피해종류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체중

표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건표(일부)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299,001 이상	300,000,000
2	298,001~299,000	299,000,000
3	297,001~298,000	298,000,000
4	296,001~297,000	297,000,000
5	295,001~296,000	296,000,000
생략	생략	생략
346	2,001~2,500	2,500,000
347	1,501~2,000	2,000,000
348	1,001~1,500	1,500,000
349	501~1,000	1,000,000
350	300이상~500	500,000

2005. 11.30)

2) 지원대상

- 사망·실종·부상자
- 주택 전파·반파·침수
- 농경지 유실·매몰, 농작물, 산림작물
-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 수산시설 :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 등
- 동·생물:가축및수산생물등
- ※ 무허가 및 공무원, 회사원 등 주업이 농어업이 아닌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인명 및 주택은 제외)

3) 피해신고 및 지원절차

- ①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피해신고서(표1)에 작성,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
- ② 시군구에서는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피해사실 여부 현지확인
- ③ 개인별 재난등급을 산정(재난등급에 따른 지원 조건표 표3) 후 시군구 예비비에서 개인별 통장계좌에 입금

4) 지원금액

-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개인별 피해 상황을 통합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 까지 지원함(재난등급에 따른 지원 조건표 표3).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